3. 都市再開發法 施行令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7-53號 1997. 1. 13

주요골자

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내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(어린이공원을 제외)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함.

개정이유

도시재개발법인 1997년 1월 13일 개정·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.